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북경제자유구역청(도 출장소) 신설에 따른 정원사항과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및 도정 현안업무 추진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3,028명 → 3,085명(+57명) (안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3,028명 → 3,085명(+57명)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 일반직 53명 증원 :
(1·2급 +1명, 3급 +1명, 3·4급 +1명, 4급 +3명, 5급 이하 +47명)
 - 별정직 1명 증원 : 5급상당 이하 +1명
 - 연구직 4명 증원 :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 소방직 : 소방정 +1명, 소방령 이하 △1명
 - 기능직 : △1명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법령개정사항 및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 정원의 총 수를 3,028명에서 3,085명으로 57명 증원하고,
- 일반직 53명과 별정직 5급 1명, 연구직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는 것임.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종시 수탁업무 추진에 따른 증원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및 동 규칙,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별정직 1명 증원 및 감사관, 도립대 사무국장 직급상향 등을 반영한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2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460명</p> <p>2.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517명</p> <p>2. ~ 4.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th> <th>직 속 기 관</th> <th>사 업 소</th> <th>출 장 소</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3,028</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일반직계</td> <td>1,160</td> <td colspan="5">-</td> </tr> <tr> <td> 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 3급</td> <td><u>10</u></td> <td><u>9</u></td> <td></td> <td><u>1</u></td> <td></td> <td></td> </tr> <tr> <td> 3~4급</td> <td><u>1</u></td> <td><u>1</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u>62</u></td> <td><u>42</u></td> <td>7</td> <td><u>4</u></td> <td>7</td> <td><u>2</u></td> </tr> <tr> <td>5급이하소계</td> <td>1,086</td> <td colspan="5">-</td> </tr> <tr> <td>별정직계</td> <td>19</td> <td colspan="5"></td> </tr> <tr> <td> 1급 상당</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 5급상당이하소계</td> <td><u>18</u></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계</td> <td>139</td> <td colspan="5"></td> </tr> <tr> <td> 연구관</td> <td><u>22</u></td> <td>1</td> <td></td> <td><u>19</u></td> <td>2</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u>117</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소방직계</td> <td>1,456</td> <td colspan="5"></td> </tr> <tr> <td> 소방정</td> <td><u>11</u></td> <td><u>2</u></td> <td></td> <td>9</td> <td></td> <td></td> </tr> <tr> <td> 소방령이하</td> <td><u>1,445</u></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기능직계</td> <td>187</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총 계	3,028	-					∴	∴	-					일반직계	1,160	-					2~3급	1		1				3급	<u>10</u>	<u>9</u>		<u>1</u>			3~4급	<u>1</u>	<u>1</u>					4급	<u>62</u>	<u>42</u>	7	<u>4</u>	7	<u>2</u>	5급이하소계	1,086	-					별정직계	19						1급 상당	1						5급상당이하소계	<u>18</u>						연구직계	139						연구관	<u>22</u>	1		<u>19</u>	2		연구사	<u>117</u>						∴	∴	∴					소방직계	1,456						소방정	<u>11</u>	<u>2</u>		9			소방령이하	<u>1,445</u>						∴	∴	∴					기능직계	187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th> <th>직 속 기 관</th> <th>사 업 소</th> <th>출 장 소</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3,085</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일반직계</td> <td>1,213</td> <td colspan="5">-</td> </tr> <tr> <td> 1~2급</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 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 3급</td> <td><u>11</u></td> <td>9</td> <td></td> <td>1</td> <td></td> <td><u>1</u></td> </tr> <tr> <td> 3~4급</td> <td><u>2</u></td> <td><u>2</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u>65</u></td> <td><u>40</u></td> <td>7</td> <td><u>5</u></td> <td>7</td> <td><u>6</u></td> </tr> <tr> <td>5급이하소계</td> <td>1,133</td> <td colspan="5">-</td> </tr> <tr> <td>별정직계</td> <td>20</td> <td colspan="5"></td> </tr> <tr> <td> 1급 상당</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 5급상당이하소계</td> <td><u>19</u></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계</td> <td>143</td> <td colspan="5"></td> </tr> <tr> <td> 연구관</td> <td><u>23</u></td> <td>1</td> <td></td> <td><u>20</u></td> <td>2</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u>120</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소방직계</td> <td>1,456</td> <td colspan="5"></td> </tr> <tr> <td> 소방정</td> <td><u>12</u></td> <td><u>3</u></td> <td></td> <td>9</td> <td></td> <td></td> </tr> <tr> <td> 소방령이하</td> <td><u>1,444</u></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기능직계</td> <td>186</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총 계	3,085						∴	∴						일반직계	1,213	-					1~2급	1					1	2~3급	1		1				3급	<u>11</u>	9		1		<u>1</u>	3~4급	<u>2</u>	<u>2</u>					4급	<u>65</u>	<u>40</u>	7	<u>5</u>	7	<u>6</u>	5급이하소계	1,133	-					별정직계	20						1급 상당	1						5급상당이하소계	<u>19</u>						연구직계	143						연구관	<u>23</u>	1		<u>20</u>	2		연구사	<u>120</u>						∴	∴	∴					소방직계	1,456						소방정	<u>12</u>	<u>3</u>		9			소방령이하	<u>1,444</u>						∴	∴	∴					기능직계	186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총 계	3,028	-																																																																																																																																																																																																																																																																																																												
∴	∴	-																																																																																																																																																																																																																																																																																																												
일반직계	1,160	-																																																																																																																																																																																																																																																																																																												
2~3급	1		1																																																																																																																																																																																																																																																																																																											
3급	<u>10</u>	<u>9</u>		<u>1</u>																																																																																																																																																																																																																																																																																																										
3~4급	<u>1</u>	<u>1</u>																																																																																																																																																																																																																																																																																																												
4급	<u>62</u>	<u>42</u>	7	<u>4</u>	7	<u>2</u>																																																																																																																																																																																																																																																																																																								
5급이하소계	1,086	-																																																																																																																																																																																																																																																																																																												
별정직계	19																																																																																																																																																																																																																																																																																																													
1급 상당	1																																																																																																																																																																																																																																																																																																													
5급상당이하소계	<u>18</u>																																																																																																																																																																																																																																																																																																													
연구직계	139																																																																																																																																																																																																																																																																																																													
연구관	<u>22</u>	1		<u>19</u>	2																																																																																																																																																																																																																																																																																																									
연구사	<u>117</u>																																																																																																																																																																																																																																																																																																													
∴	∴	∴																																																																																																																																																																																																																																																																																																												
소방직계	1,456																																																																																																																																																																																																																																																																																																													
소방정	<u>11</u>	<u>2</u>		9																																																																																																																																																																																																																																																																																																										
소방령이하	<u>1,445</u>																																																																																																																																																																																																																																																																																																													
∴	∴	∴																																																																																																																																																																																																																																																																																																												
기능직계	187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총 계	3,085																																																																																																																																																																																																																																																																																																													
∴	∴																																																																																																																																																																																																																																																																																																													
일반직계	1,213	-																																																																																																																																																																																																																																																																																																												
1~2급	1					1																																																																																																																																																																																																																																																																																																								
2~3급	1		1																																																																																																																																																																																																																																																																																																											
3급	<u>11</u>	9		1		<u>1</u>																																																																																																																																																																																																																																																																																																								
3~4급	<u>2</u>	<u>2</u>																																																																																																																																																																																																																																																																																																												
4급	<u>65</u>	<u>40</u>	7	<u>5</u>	7	<u>6</u>																																																																																																																																																																																																																																																																																																								
5급이하소계	1,133	-																																																																																																																																																																																																																																																																																																												
별정직계	20																																																																																																																																																																																																																																																																																																													
1급 상당	1																																																																																																																																																																																																																																																																																																													
5급상당이하소계	<u>19</u>																																																																																																																																																																																																																																																																																																													
연구직계	143																																																																																																																																																																																																																																																																																																													
연구관	<u>23</u>	1		<u>20</u>	2																																																																																																																																																																																																																																																																																																									
연구사	<u>120</u>																																																																																																																																																																																																																																																																																																													
∴	∴	∴																																																																																																																																																																																																																																																																																																												
소방직계	1,456																																																																																																																																																																																																																																																																																																													
소방정	<u>12</u>	<u>3</u>		9																																																																																																																																																																																																																																																																																																										
소방령이하	<u>1,444</u>																																																																																																																																																																																																																																																																																																													
∴	∴	∴																																																																																																																																																																																																																																																																																																												
기능직계	186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지방공립대학 등) ① (생략)

②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전문대학에 교무과·학생과 등과 사무국이나 서무과를 둘 수 있다.

③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④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⑤ ~ ⑥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

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2호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하며, 서울특별시의 담당관 중 1명은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7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4명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의 담당관 중 4명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담당관 중 2명(감사 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경기도의 담당관 중 4명(1명은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담당관 중 2명(감사 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그 밖의 광역시·도의 담당관 중 1명(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소방담당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담당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담당 과장 중 1명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다만, 비상기획 업무, 여성정책 업무 및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의 경우에는 같은 직급 상당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② ~ ③ (생략)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 ⑧ (생략)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영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인건비용 추계서

-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3,028명 ⇒ 3,085명 (증57명)
 - 일반직 +53명, 별정직 +1명, 연구직 +4명, 기능직 △1
- 추가 소요 비용 : 3,658,346,639원 (1년)

(단위 : 원)

구 분(예산과목)	추가 소요비용	비 고
총 계	3,658,346,639	
○ 인건비	2,833,458,749	
- 기본급	2,095,888,800	
- 수 당	493,787,054	
- 정액급식비	88,920,000	
- 명절휴가비	104,794,440	
- 연가보상비	50,068,455	
○ 물건비	137,040,000	
- 직급보조비	140,580,000	
○ 이전경비	687,847,890	
- 성과상여금	145,456,890	
- 연금부담금	197,984,000	
- 보전금	203,830,000	
- 퇴직수당부담금	65,955,000	
- 국민건강보험금	74,622,000	